

HLB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09.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구성

제5조(위원)

- ①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사무국)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장은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할 직원 수명을 위원회 사무국에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소집시 그 소집일자를 결정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회일 24시간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4장. 부의사항

제12조(부의사항의 종류)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아래 각호와 같이 결의사항, 보고사항, 논의사항으로 구분한다.

1. 결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수정승인, 보완, 부결로 결의함
2. 보고사항: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결의에 갈음함
3. 논의사항: 차기 이후 회의에 부의될 사항으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부의하며, 결의를 요하지 않음

제13조(결의사항)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
2.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보고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5조 결의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위원 및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결의사항의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0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